

목록

1.....	1
2.....	2



김해시복지재단

## 김해시복지재단 & 김해청년다움 업무협약서

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청년다움은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청년다움은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운영원칙)

-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### 제3조(협력 범위)

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청년다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.

1. 청년관련 포럼, 프로그램, 김해시 협력사업 등에 관한 협력
2. 청년관련 조사연구 및 재능나눔 활동 협력
3.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실천협력
4.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
5. 기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 진행



## 김해시복지재단

### 제4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5조(협약의 변경)

본 협약의 내용과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문서로 상호 통보하되 협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. 단,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할 수 있다.

### 제6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, 협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의 효력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
- ② 협약기관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,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9월 8일



김해시복지재단



Gimhae Youth DAOM

김해시복지재단

대표이사 허만원

서명

김해청년다움

센터장 최제석

서명